

■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[별표 1] <개정 2025. 1. 23.>

정근수당 지급 구분표

1. 정근수당

근무연수	지급액
2년 미만	월 봉급액의 10% 해당금액
5년 미만	월 봉급액의 20% 해당금액
6년 미만	월 봉급액의 25% 해당금액
7년 미만	월 봉급액의 30% 해당금액
8년 미만	월 봉급액의 35% 해당금액
9년 미만	월 봉급액의 40% 해당금액
10년 미만	월 봉급액의 45% 해당금액
10년 이상	월 봉급액의 50% 해당금액

2. 정근수당 가산금

근무연수	월지급액	비고
20년 이상	100,000원	(추가 가산금)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,000원을,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,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
15년 이상 20년 미만	80,000원	
10년 이상 15년 미만	60,000원	
5년 이상 10년 미만	50,000원	
5년 미만	30,000원	

비고: 위 표에서 “월봉급액” 이라 함은 해당 법관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.